

서울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 중구 대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296 / 전송725-4218
처리부서 : 환경과(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내 별관3층) 담당 최홍식

문서번호	환경 13130-1823	취급	시장
시행일자	1995. 12.	보존	
(제 1 안)		보사환경국장	전결
수신	내부결재	환경과장	법무담당관심사필
참조		환경기획계장	
제 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안 입법 예고	기안	최홍식
			협조

1995. 12. 22.
제 1995-18호

고시·공고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계획 ('95.10.14 시장방침 제956호) 및 환경 13130-1609('95.1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안 심사 : 법무담당관

다. 예고방법 : 시보에 및 서울특별시 신문 게재의뢰(공보관)

라. 예고기간 : 20일 이상

마. 기타 홍보방법

○ 반성회보 게재(요약) : 자치구

○ 시산하 각기관 게시판 게시

○ 서울시 의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민간단체,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등 주요인사 및 기관에 의견제출 요청

○ 환경부 통보

원본대조필

따로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초안) 1부. 끝.

093

4 - 1

23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안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예고코자 하오니, 상위법령이 없는 관계로 조례안 전부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입법예고안 2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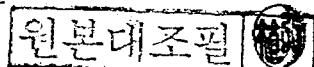
보 사 환 경 국 장

(제 3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 통보

1.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예고코자 조례안을 통보하니,
2. 시 공무원과 관련부서는 물론 시민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게시 또는 통지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받는곳 : 서과 1-67, 서본부 1-4, 서사 1-37

094

4-2

94

(제 4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 보냄

1.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서울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 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서울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하고 그 입법예고안(조례안 포함)을 송부하니 반상회보에 게재하거나 각기관(부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구 1-25 (환경과장 또는 산업환경과장)

(제 5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원본대조필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 보냄

1.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서울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 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서울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코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보, 각기관 게시판 등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귀하(의원, 단체, 협회, 위원)에게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과 조례안을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 조례가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의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로붙임 : 1. 입법예고안 및 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받는곳 : 녹색서울시민위원회(100명), 환경운동연합의 113개단체, 환경전문가 (이정전 교수외 7명), 서울시의회 의원(146명)

(제 6 안)

수신 환경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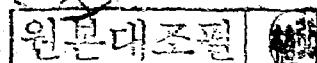
참조 정책총괄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 통보

1.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서울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서울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코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경우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입법예고안 및 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096

4-4

96

공 고 (안)

3.2 실시 1995.5.1~6.20~7.1.3
담당자 법제국 환경부 담당관
1 2 3 기록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995년 12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제명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2. 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의 취지

원본대조필

- (1) 현행 환경법령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환경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관련 자치법규가 없으므로,
- (2)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서울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서울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 기본이념
- (2) 시·자치구·시민·사업자의 책무
- (3) 환경기준의 설정 및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4) 정보의 공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 (5) 기타 사항은 따로붙임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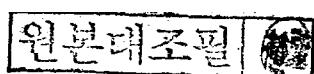
나.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것은 서울특별시 환경과(전화 731-62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방재심의결과·주제곡〉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서 울 특 별 시

09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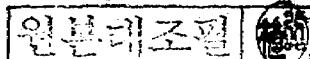
99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대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③ 시의 지구환경에 대한 보전은 모든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고 이것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 3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오존층파괴·해양오염·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 또는 시장의 책무) ① 시 또는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종의 보전 및 기타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 또는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구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또는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제5조 (자치구의 책무) 자치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책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와 기타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른 환경오염의 저감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것 외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한 환경보전에 스스로 노력함과 동시에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할 책무를 진다.

-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시민은 그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8조 (서울시를 방문하는 사람의 책무) 시를 방문하는 다른 시·도민과 외국인은 시의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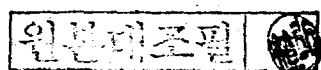
제9조 (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자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자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11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환경기본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목표
2. 환경보전 시책방향
3. 환경보전 시행지침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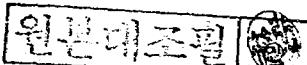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이 조례에 의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및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수정시 환경기본 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은 이를 중단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시 및 자치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환경영향평가의 조치) ①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의 실시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 (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것 이외에 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원칙 조정

- ② 시는 공원, 녹지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과정·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행정에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시는 자치구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원문다운로드

제23조 (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

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 (감시, 측정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환경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7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일본대조판

- 제28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구환경보전시책의 추진등

제29조 (지구환경보전 시책 추진) 시는 지구 온난화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등) 시는 외국,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民間단체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술의 교류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관련 위원회 등

제31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심의·조정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서울시민으로 구성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둔다.

②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직, 기능,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